

보도시점 2025. 4. 1.(화) 조간 배포 2025. 3. 31.(월) 09:00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것! 채무자대리인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무료입니다.

- ◆ 채무자대리인 지원 절차와 관련 시스템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
 -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서 접수 후,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 단축
 - 신청 창구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민금융진흥원)로 확대
 - 상담·신청을 위한 금융감독원 전담 직통번호 개설 및 인력 확충
 - 신청 이후 진행상황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피해 대응요령 안내 강화

정부는 '25.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

※ [참고] '25.1분기 기준 채무자대리인 지원실적은 1,343건으로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시행 이후 같은 기간 동안(매 1분기 실적) 가장 높은 수준

↳ ('21.1Q) 839건 → ('22.1Q) 682건 → ('23.1Q) 1,258건 → ('24.1Q) 402건 → ('25.1Q) 1,343건

우선, 신청양식을 간소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주관식)에서 선택형(객관식)으로 변경*하여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신청 항목의 용어 및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불법추심 상대방 정보, 피해 유형, 추가 조치 요구사항 등

** 용어변경: '채권내역 → 대출내역', '대출접촉 경로 → 불법대출을 알게 된 경로' 등

그 동안은 서술형(주관식)으로 작성된 신청서 내용에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 된 내용들이 많아 금융감독원에서 재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들과의 연락지연·두절 등의 이유로 법률구조공단으로 신속히 이관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오프라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게 되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인은 금융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원 조력하에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법무부의 법률구조플랫폼* (온라인)으로도 신청 창구가 확대되어 다른 법률구조서비스와 함께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도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적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26.1월부터 서비스 시행 예정)

셋째,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등을 위한 전용 직통번호*(☎1332 → 3번 누르고 → 신설 6번 누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으로 바로 연결)도 신설·운영(6월 예정)한다. 현재, 모든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 → 3번)로 연결되어 있어,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을 위한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어 신청인들이 신속히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 직원을 충원(2분기 중)하여 상담원과의 통화 대기 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 ☎1332(금융감독원 콜센터) → 3번(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6번(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마지막으로, 신청 이후 진행상황 안내도 강화('25.4.4일)한다. 지금까지는 정상접수 여부만을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접수 이후의 진행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까지 추가적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요령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한편,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4.12월부터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각 지자체의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 등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홍보 현수막과 포스터를 설치하여 신청 방법 및 불법사금융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25.4월부터는 쇼츠(shorts) 등을 통한 대국민 온라인 홍보도 이어 나갈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맞춤형 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 방법

- ① (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번)
-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 ③ (모바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오른쪽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QR코드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책임자	과 장	전수한	(02-2100-2510)
		담당자	사무관	성종현	(02-2100-2511)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책임자	국 장	이행정	(02-3145-8270)
		담당자	팀 장	천성준	(02-3145-8280)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책임자	부 장	백영종	(054-810-1061)
		담당자	과 장	김근태	(054-810-1062)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소비자보호부	책임자	부 장	김대환	(02-2128-8320)
		담당자	팀 장	배성훈	(02-2128-827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 1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통한 피해구제 사례

- ① A씨는 채무 과다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급전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지인 연락처를 제공하고 50만원을 차용하였음. 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는 부모님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
 - ② B씨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를 통해 가족·친구·직장동료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30만원을 대출받고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출을 받았음. 대출 당시 '1주일 후 상환을 못할 경우 25만원을 추가 입금하면 1주일간 상환을 연장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연장하면서 결국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고, 사실상 더 변제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음. 그러나 대출 원금이 미상환되었다며 전화,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의 채권추심이 심하여 B씨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
 - ③ C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지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었음. 처음에는 급한 생활비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으나, 정해진 상환 일자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불법사금융업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독촉 전화하며 상환 협박을 하였음. 그 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불법사금융업자는 계속해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채무사실을 남편 D와 친정어머니 E에게까지 알렸음. 또한 C씨의 미성년 자녀 F에게도 채무사실을 고지한다고 협박하면서 계속해서 초과 이자를 요구하였음. C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F에게 본인의 채무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계속해서 이자를 납입하였지만, 계속되는 협박과 욕설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관계인 포함)을 신청
- ➔ 위 사례들은 무효이거나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 추심, 반복적인 전화 또는 주거지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 금전 차용해서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하는 경우로 모두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채무자와 연락하여 법률상담을 통하여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후의 고소 절차 및 증거확보 절차를 안내함. 동시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를 하여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토록 하였고, 채무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남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 | | |
|--------------------------------|----------------------------|
| ①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
|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
|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 ⑧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
| ④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
|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

1.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대상은?

- (채무당사자)**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영업)·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채무당사자
- (관계자)** 불법추심피해(우려)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가족, 지인 등 최대 5명)

2.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본인부담금은 없는지?

- (채무자대리)**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등을 대신해 채권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며, 지원대상자 모든 건에 대해 무료로 지원되고 있음
-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 다만, 소송대리의 경우는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농어업인은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에 부합할 경우 무료로 지원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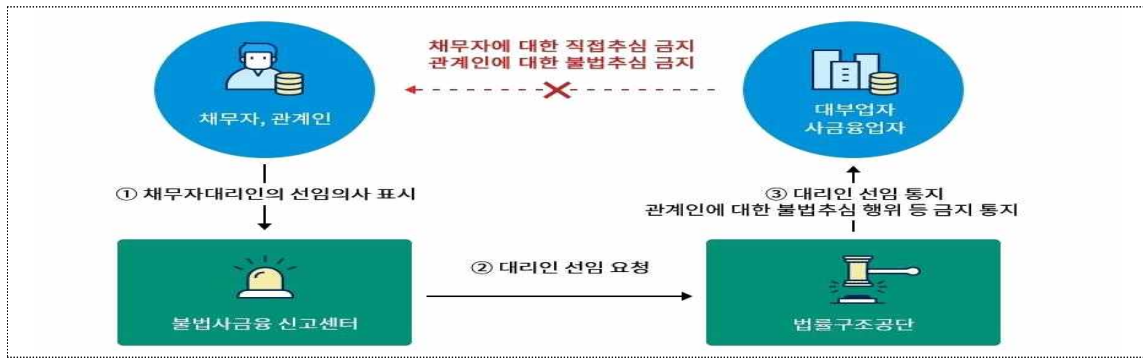
3. 지원기간은 얼마인지?

- 최초 6개월이며, 1회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 가능

4. 신청 이후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사실 확인 접수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이관, 법률구조공단은 구조 여부를 결정하여 대리인 선임을 통지함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운영체계 >



5.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3)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0)에서 신청 관련 상담 및 문의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kinfa.or.kr > 고객상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센터찾기)' 고객상담'에서 확인 가능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신청 화면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01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에서 소액생계비대출·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02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등의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03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04 합법적인 등록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사전에 확인한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금감원(☎1332→3번)으로 신고하세요!
*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해당 지자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금감원

05 법정 최고이자율은 20%입니다!

- 법정 최고금리인 연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06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대출·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07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성착취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08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보관하세요!

- 대부계약체결시 대부업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받고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교부 받으세요.

09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신고하세요!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입니다.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1332→3번)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하세요!

10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당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세요.
*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132)를 통해 신청

1. 피해 사실 확인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 이자를 원금의 연 20% 초과하여 요구하는 행위,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추심행위 등은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 * 1일 0.0547%, 1개월 1.66%, 1분기 5.0%

2. 위반사실 고지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세요!

- ✓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세요.
- ✓ 채무 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세요. 불법 및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

3. 증거 확보

피해 증거를 기록하세요!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4. 피해 신고

피해 사실을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 ✓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1332→3번)·경찰(☎112)에 신고하세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등을 통해 신변보호 신청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

채무당사자는 물론, **관계인**도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구제 요청

무료 법률서비스 등 도움을 요청하세요!

- ✓ 불법사금융(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이용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 * 금감원(☎1332→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화 소송(금감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법률구조공단)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 등에 유포(우려)된 성착취 피해촬영물에 대해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피해촬영물 삭제 등을 요청하세요.